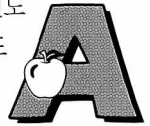




공사도급업체에 대한 협의체 구성시 그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요.(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또한, 어떤 공사 추진시 원발주사(A사)가 B사에 도급을 주고 또 다시 B사는 C와 D사에 각각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A사는 B사에 대해서만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C와 D사 모두에 대해 각각 협의체 구성을 하여야 하는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은 건설업에 있어 원도급과 하도급의 근로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서 동 협의체를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써, 도급인인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되며 하수급인의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며, 하수급인이 다시 하도급을 준 경우에도 모든 수급인이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2 규정에 의한 지도사 시험의 2001년 계획은 있는지요. 계획이 있다면 그 시기가 궁금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현재 개별 법령에 의해 소관부처가 자체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국가 자격을 통일된 기준하에 관리·운영되도록 “자격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지도사 시험도 동 법률에 규정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금년에 산업안전지도사 시험 시행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아파트현장으로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였는데 발주처에서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다시 작성,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안전관리계획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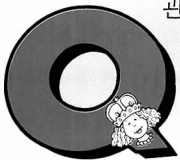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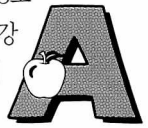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안전·보건상의 조치로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바, 당해 공사가 건설관리기술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건설관리기술법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통합 작성할 경우 각각의 관련법에 해당하는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해당기관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사업장으로 한 라인이 2001년5월에 분사되어 새로운 법인이 새로이 생겼습니다. 공정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변동이 없고 그대로이나, 사업주, 사업체명이 바뀌게 되었는데 새로이 채용건강진단과 배치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예전의 회사의 검진주기에 의해서 일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하여 실시하는 근로자건강진단은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사업체명이 바뀌었을 뿐 기존 근로자의 변동 없이 그대로 동일직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기존에 받았던 건강진단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리감독자라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이며 위험방지가 특별히 필요한 곳은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이때 관리감독자 안전교육은 일반 구매, 영업, 관리부서는 일단 제외되는지와 정비, 품질, 설비부서는 포함되는지요. 또한 부서장 만 실시하는지요. 아니면 휘하 과장, shift장까지 관리감독자에 포함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 생산과 연관되는 해당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직장, 조장, 반장, 계장)등을 관리감독자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구매, 영업, 관리부서는 직접 생산과 관련되지 않으므로 관리감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정비, 품질 설비부서는 생산과 관련되므로 관리감독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감독자의 범위는 부서장뿐만 아니라 생산과 관련된 계선상의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택가 재건축 현장 앞 골목길을 승용차로 운전하고 지나가던 중, 콘크리트 펌프카를 조정하던 기사가 뒷걸음질로 제차의 측면에 부딪혔습니다. 현재 저는 교통사고 야기도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있으며, 운전면허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와 제6조의 내용을 보면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별표8을 보면 유해 또는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로 콘크리트 펌프카가 23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방지 내용은 무엇이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교통통제를 해야하는 책임은 없는지요. 콘크리트 펌프카를 조정하는 면허는 필요 없는지요. 또한, 공사현장에서의 교통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이 안되는지와 기타 그 외의 적용법률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8]은 기계 기구 설비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자가 유해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여야할 대상(동법 제33조 제2항)을 열거한 것으로서 유해위험방지조치 내용은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건설기계가 전도될 위험이 있는 장소나 근로자가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장비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221-222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면허를 취득한 자가 작업하여야 하며(동법 제47조), 공사 현장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도 받음)

